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('18.1.1. 부터)

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란?
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
지원대상

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

-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
-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(신청일 기준)
*단,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
- 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

지원금액

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
•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

지원방식

- 사업시행기관 | 근로복지공단
- 지급방식 |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
- 지급방법 | 현금지급 및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

신청서 접수 |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가능

온라인

4대 사회보험공단 (근로복지공단, 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)
고용노동부 홈페이지
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

오프라인 방문·우편·팩스 접수

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
고용노동부 고용센터
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

문의·상담

근로복지공단 1588-0075 | 고용센터 1350

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주소
www.jobfunds.or.kr

소상공인 생활안정의 수호천사

2018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




지원절차

문의처



신청 및 접수

1인 소상공인

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

(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, 근로자 50인 미만이면 가입가능)

-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 문의 후 가입 또는
-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(total.kcomwel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②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(연 1회)

근로자가 없고,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등급으로 가입된 1인 소상공인

※ 지원제외 : 유흥·투기 조장업종 등 일부업종 제외 (시행공고 참조)

- 방문신청 :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
- 이메일신청 : go@semas.or.kr
- 팩스신청 : 042-367-7706
- ※ 추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예정

심사

(고용보험료 납부 내역 등)

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

-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 확인
- 1인 소상공인 확인
- 지원제외 대상 확인

지급

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

- 분기별로 지급
: '18년 4월, 7월, 10월, '19년 1월
(예시) 4월~6월까지 신청한 경우 7월에 지급(1월부터 6월까지 납부분 지급)
- '18년 1월에 납부한 보험료부터 소급하여 적용
(예시) '18년 7월에 신청하더라도 '18년 1월 납부분까지 소급하여 지급
- 최대 24개월분 지급

사후관리

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

- 만족도 조사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

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go.sbiz.or.kr

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

지역	센터명	전화번호	지역	센터명	전화번호
서울	(서울)중부센터	02-720-4711	강원	(강원)춘천센터	033-243-1950
	(서울)동부센터	02-2215-0981		(강원)강릉센터	033-645-1950
	(서울)서부센터	02-839-8311		(강원)원주센터	033-746-1950
	(서울)남부센터	02-585-8622		(강원)삼척센터	033-575-1950
	(서울)북부센터	02-990-9101		(충북)청주센터	043-234-1096
경기	(경기)수원센터	031-244-5161	충북	(충북)충주센터	043-854-3616
	(경기)평택센터	031-656-5302		(충북)음성센터	043-873-1811
	(경기)화성센터	031-8015-5301		(충북)제천센터	043-652-1781
	(경기)광명센터	02-2066-6348		(충북)옥천센터	043-731-0924
	(경기)성남센터	031-788-7341		(충남)천안시내센터	041-567-5302
인천	(경기)의정부센터	031-876-4384	충남	(충남)논산센터	041-733-5064
	(경기)부천센터	032-655-0381		(충남)서산센터	041-663-4981
	(경기)고양센터	031-925-4266		(충남)공주센터	041-852-1183
	(경기)안양센터	031-383-1002		(전북)전주센터	063-231-8110
	(경기)안산센터	031-482-2590		(전북)남원센터	063-626-0371
대구	(인천)남부센터	032-437-3570	전북	(전북)익산센터	063-853-4411
	(인천)북부센터	032-514-4010		(전북)군산센터	063-445-6317
	(대구)남부센터	053-629-4200		(전북)정읍센터	063-533-1781
	(대구)북부센터	053-341-1500		(전남)목포센터	061-285-6347
	(대전)북부센터	042-864-1602		(전남)여수센터	061-665-3600
광주	(대전)남부센터	042-223-5301	(전남)순천센터	061-741-4153	
	(광주)남부센터	062-366-2122	(경북)안동센터	054-854-3281	
	(광주)서부센터	062-954-2084	(경북)구미센터	054-475-5682	
	(광주)북부센터	062-525-2724	(경북)포항센터	054-231-4363	
	(부산)북부센터	051-341-8053	(경북)경주센터	054-776-8343	
울산	(부산)남부센터	051-633-6561	경남	(경남)창원센터	055-275-3261
	(부산)동부센터	051-761-2561		(경남)진주센터	055-758-6701
	(부산)중부센터	051-469-1644		(경남)김해센터	055-323-4960
	(울산)울산센터	052-260-6388		(경남)통영센터	055-648-2107
	(제주)제주센터	064-751-2101		-	-



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
영세한 1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,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재기 지원을 위해 월 고용보험료의 30%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

사업분야 및 대상

지원대상

“자영업자 고용보험”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* 1등급(154만원)인 자

※ 기준보수(소득대체지표)

: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

• 지원제외 : 유흥·투기조장업종, 전문직 등 일부업종 제외

소급지원

자격 유지 시, '18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에 대해 '18년 1월 납부분까지 소급하여 지원

(예시)

'18년 7월에 신청하더라도 '18년 1월~7월 납부분까지 소급하여 지급

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

go.sbiz.or.kr

지원내용



지원내용

지원규모	10,000명
지원수준	월 고용보험료 34,650원의 30% (자부담 70%)
지원기간	최대 2년
지원금액	1인당 월 10,400원 (연간 124,800원)
지급시기	매 분기 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익월에 당해분기 납부금액의 일부(30%)를 지원

지원금 지급 시기

'18년 4월, 7월, 10월, '19년 1월

(예시)

4월~6월까지 신청한 경우 7월에 지급
(1월부터 6월 납부분까지 함께 지급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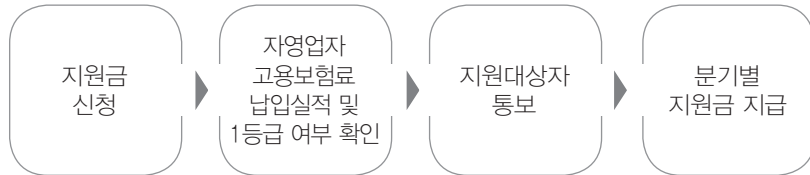
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

신청 횟수 연중 1회 신청

신청기간 2018. 1. 1. ~ 2018. 12. 31.
(자금소진 등 사유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)

신청방법 팩스·이메일 신청
• 팩 스 : 042-367-7706
• 이메일 : go@semas.or.kr
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(59개) 방문 신청
• 홈페이지 접수창구 개설 이후 이메일과 팩스 신청은 받지 않을 예정

신청절차



제출서류

-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.nhis.go.kr에서 발급가능
-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1부

지원대상 여부 확인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SMS·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



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?

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,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,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, 자연재해, 질병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경우,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료 1년 이상 납부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(기준보수의 50%)를 3~6개월간 지급받고, 직업능력개발훈련(비용의 40~100%)도 지원

가입대상

-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
-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

※ 다만, 부동산임대업, 가사서비스업, 5인 미만 농업·임업·어업·수렵업,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고용보험료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아래 등급 중 1개 등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
등급	기준보수	실업급여 (2%)	고용안정·직능 (0.25%)	합계 (2.25%)
1	1,540,000	30,800	3,850	34,650
2	1,730,000	34,600	4,320	38,920
3	1,920,000	38,400	4,800	43,200
4	2,110,000	42,200	5,270	47,470
5	2,310,000	46,200	5,770	51,970
6	2,500,000	50,000	6,250	56,250
7	2,690,000	53,800	6,720	60,520

• 월 보험료
(예시) 기준 보수액 1등급 기준
1등급 기준보수 154만원 × 보험요율 2.25% = 34,650원

신청방법

- 근로복지공단 1588-0075 전화 문의 후 가입
- 고용·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www.kcomwel.or.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